

# 서울특별시 마포구 안전도시만들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20-112
----------	--------

제출년월일 : 2020. 9. .

제출자 :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

## 1. 제안이유

목적·기능상 위원회가 필요하나 안전 발생 빈도가 적어 조례개정을 통해 안전도시만들기 위원회를 비상설 위원회로 전환하여 위원회 내실화를 도모하고자 함.

## 2. 주요내용

- 가. 마포구 안전도시만들기 위원회의 비상설화를 위하여 제10조제3항의 회의 소집규정을 안전이 발생하면 즉시 소집하고 심의·의결 후 자동해산하도록 규정을 신설함(안 제10조제3항).
- 나. 위원회 비상설화에 따라 위촉위원의 임기(2년, 연임 가능) 및 해촉 관련규정을 삭제함.(안 제11조, 제12조).
- 다. 위원회의 실무사항을 심의하는 실무위원회도 비상설화 규정을 신설하고(안 제13조제4항), 위원의 임기(2년, 연임 가능) 관련규정 삭제(안 제5항)

## 3. 주요 토의과제

없음

## 4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

나.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

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
라. 기타사항

1) 입법예고 : 2020. 7. 16. ~ 8. 5. (제출된 의견 없음)

2) 감사담당관의 자치법규 부패영향자율평가 결과 : 해당없음

3) 기획예산과의 행정규제심사 검토결과 : 원안 동의

4) 여성가족과의 자치법규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: 해당없음

5) 제16회 서울특별시 마포구 조례규칙심의회 심의·의결(2020. 8. 11.)

## 서울특별시 마포구 안전도시만들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마포구 안전도시만들기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마포구민(이하 “구민”이라고 한다)”을 “서울특별시 마포구민”으로 한다.

제3조제1항 중 “구민”을 “서울특별시 마포구민(이하 “구민”이라 한다)”로 한다.

제8조제2항 중 “1인을 포함한 25인”을 “1명을 포함한 25명”으로, “구성하며”를 “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며”로 한다.

제10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조 제4항 중 “재적위원”을 “위원장이 소집하며, 재적위원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6항 중 “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”를 “제5항에 따라”로 하고, 같은 조 제8항 중 “1인”을 “1명”으로 하고, “보건행정과장”을 “의약과장”으로 한다.

③ 위원회는 심의 안건이 발생할 때마다 구성·운영하고 심의 종료 후에는 자동 해산하는 것으로 본다.

제11조 및 제12조를 각각 삭제한다.

제13조제1항 후단 중 “10인”을 “10명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“제9조에 규정된 사항 중”을 “제9조 각 호에 따른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5항을 삭제하고, 같은 조 제4항을 제5항으로 하며,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④ 실무위원회는 심의 안건이 발생할 때마다 구성·운영하고 심의 종료 후에는 자동 해산하는 것으로 본다.

제1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14조(수당) 구청장은 위원 중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 
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 
제외한다.

1. 서울특별시 마포구 소속 공무원이 위원회의 위원으로 참석한 경우
2.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의 의원이 의원의 자격으로 위원회에 참석한 경우

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<u>마포구민</u> (이하 “구민” 이라고 한다)의 손상예방 활동과 안전의식 함양을 위하여 추진하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안전도시만들기 사업의 원활한 수행과 세계보건기구(WHO)가 권장하는 안전도시 요건을 갖추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	<p>제1조(목적) ----- <u>서울특별시 마포구민</u>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
<p>제3조(기본원칙) ①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 이라 한다)은 <u>구민의 모든</u> 생활환경에서 손상예방과 안전증진을 도모하고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노력한다.</p>	<p>제3조(기본원칙) ① ----- ----- <u>서울특별시 마포구민(이하 “구민” 이라 한다)의 모</u>----- ----- -----.</p>
<p>②·③ (생략)</p>	<p>②·③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8조(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) ① (생략) ② 위원회는 위원장 <u>1인</u>을 포함한 <u>25인</u> 이내의 위원으로 <u>구성</u>하며,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</p>	<p>제8조(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) ① (현행과 같음) ② ----- <u>1명</u>을 포함한 <u>25명</u> ----- <u>성별</u>을 고려하여 <u>구성</u>하며----- -----.</p>
<p>③ (생략)</p>	<p>③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10조(위원회의 운영) ①·② (생략)</p>	<p>제10조(위원회의 운영) ①·② (현행과 같음)</p>

③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.

1.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

2.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

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⑤ (생략)

⑥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과 관련한 자료의 제출,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기관 또는 단체에서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.

⑦ (생략)

⑧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두며 간사는 보건행정과장이 되고, 서기는 관련업무 담당팀장이 된다.

⑨ (생략)

제11조(위원의 임기) ①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되어 있는  
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.

③ 위원회는 심의 안건이 발생할 때마다 구성·운영하고 심의 종료 후에는 자동 해산하는 것으로 본다.

④ ----- 위원장이 소집하며, 재적위원 -----  
-----.

⑤ (현행과 같음)

⑥ 제5항에 따라 -----  
-----  
-----  
-----.

⑦ (현행과 같음)

⑧ -----  
----- 1명 -----  
----- 의약과장 -----  
-----.

⑨ (현행과 같음)

<삭 제>

② 공무원 이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.

제12조(위원의 해촉)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.

1. 위원이 소관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품위 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2. 위원이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

제13조(실무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) ① 위원회의 소관사항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설치한다. 실무위원회의 위원(이하 “실무위원”이라 한다)은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, 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되고, 간사는 관련업무 담당팀장이 된다.

② (생략)

③ 실무위원회에서는 제9조에 규정된 사항 중 실무에 관한 사

<삭 제>

제13조(실무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) ① -----

-----

----- . -----

-----

----- 10명 -----

-----

----- .

② (현행과 같음)

③ ----- 제9조 각 호에 따른 -----

항을 심의한다.

<신 설>

④ (생략)

⑤ 공무원인 실무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, 위촉직 실무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.

⑥ (생략)

제14조(수당 및 여비)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, 관계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 다만, 공무원인 위원이 그 업무와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-----.

④ 실무위원회는 심의 안건이 발생할 때마다 구성·운영하고 심의 종료후에는 자동 해산하는 것으로 본다.

⑤ (현행 제4항과 같음)

<삭 제>

⑥ (현행과 같음)

제14조(수당) 구청장은 위원 중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.

1. 서울특별시 마포구 소속 공무원이 위원회의 위원으로 참석한 경우
2.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의원이 의원의 자격으로 위원회에 참석한 경우



# 서울특별시 마포구 안전도시 만들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## 1.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

- 조례 개정에 따른 추가비용 발생 없음

## 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12조 제2항 제1호에 해당
  1.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,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

## 3. 미첨부 사유

- 조례 개정에 따른 추가비용 발생 없음

## 4. 작성자

작 성 자	보건소 의약과 최민건
연 락 처	02-3153-9883